##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48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이강일·강준현·김남근

김태선 • 민병덕 • 박상혁

박홍배 • 박희승 • 신장식

임미애 · 정성호 · 황명선

황운하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카카오페이,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간편송금업 체에 후원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 보제공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,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(안 제17조제13항).

법률 제 호

###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3항 중 "금융기관"을 "금융기관 및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(이하 "전자금융업자"라 한다)"로, "금융기관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도"를 "금융기관및 전자금융업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전자금융거래법」에도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정치자금영수증) ① ~ ⑫	제17조(정치자금영수증) ① ~ ⑫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후원회는 제34조(회계책임	13
자의 선임신고 등)제4항에 따	
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	
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	
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	
행을 위하여 해당 <u>금융기관</u> 에	<u>금융기관 및</u>
입금의뢰인(신용카드 · 전화 또	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4
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	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(이하
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)의	"전자금융업자"라 한다)
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	
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그	
요청을 받은 <u>금융기관은 「금</u>	
용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	
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지체	
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	금융기관 및 전자금융
다.	업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
	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
	자금융거래법」에도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